

國家公務員 提案規程 改正公布

— 補償率을 大幅引上 —

政府는 優秀創案을 提案한 國家公務員에게 試製品 製作 등에 所要된 經費의 補償과 아울러 嶄新한 제안을 誘導하기 위하여 補償金을 從前의 倍額으로 大幅引上하였으며 特別昇進 또는 特別昇給의 機會도 주고자 國家公務員 提案規程을 改正하여 大統領令 第8199號('76. 7. 29)로 公布하였다.

本會는 會員企業 및 關係機關에서 組織內의 優秀創案에 대한 補償 및 管理에 參考가 될가 하여 改正된 公務員提案規程 및 同施行規則을 3회로 나누어 連載한다.

< I 回 >

提案規程

1973. 7. 2 大統領령 제6750호
개정 1976. 7. 29 大統領령 제8199호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 이하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適用範圍)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條 (用語의 定義)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정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第4條 (提案의 種類)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정부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안을 말한다.

第5條 (提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런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직무발명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실제로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견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第6條 (提案者의 資格) 공무원인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第7條 (提案制度의 管掌機關) 총무처장관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第8條 (意見照會) ①총무처장관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第2章 提案審査委員會

第9條 (設置) 이 영에 의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第10條 (構成)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처장관,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행정 각 부처의 차관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는 총무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第11條 (委員長)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第12條 (審議事項)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
2. 창안의 실시범위·실시기간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상여금의 지급
5.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第13條 (會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14條 (小委員會)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에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총무처장관이 지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무처장관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5條 (專門委員) ①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第16條 (幹事와書記)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총무처소속 공무원 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第17條 (委員의手當)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第18條 (運營細則)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第3章 提案의提出 및 接受

第19條 (提案의提出)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한다.

第20條 (提案의接受) ①총무처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第4章 審 查

第21條 (提案의 審査基準)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第22條 (調査·實驗 및 意見聽取)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실험·조사·분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第23條 (提案의 採擇基準)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특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은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계속>